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

2021. 2. 15. 제정 판 (시행 2021. 3. 1.) → 2026. 5. 4. 개정 판 (시행 2026. 5. 4.)

바뀜 2 · 신설 2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414/compare?from=1071&to=1741>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5:17:04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신설 2026-05-04>
<신 설>	제1조의3(조직) ① <u>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② <u>센터장은 금연·금주클리닉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u> <신설 2026-05-04>
제5조(사업운영)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2.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3.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4.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② 금연프로그램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2.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3.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4.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2.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등으로 공고한다. 3.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2.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3.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⑤ 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상담을 진행한다. 2.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3.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제5조(사업운영)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u>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u>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2.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3.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4.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② <u>금연프로그램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u>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u> 2.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3.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4.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u>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u>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2.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u>표어</u> 등으로 공고한다. <개정 2026-05-04> 3.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u>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2.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3.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⑤ <u>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u> 1.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u>학생상담센터와</u>

현행	개정안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2.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3.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제6조(건강증진위원회) 본 센터의 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수정될 수 있다. 3. 위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으로 하며, 서기는 금연금주클리닉 센터장으로 한다.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교수대표 2인, 직원대표 1인,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교수대표는 3인으로 한다. 4.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2. 회의 사전공지는 10일전에 실시한다. 3. 회의록은 서기가 기록한다. 4. 회의록은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조사(수요조사)에 의한 사업 계획 2. 사업 실행 점검 3. 프로그램 진행 사후평가(만족도 조사) 분석 4.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제6조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조직) ① 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금연·금주클리닉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운영)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2.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3.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4.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 ㉔ 금연프로그램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2.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3.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4.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㉕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2.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표어 등으로 공고한다.
 3.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 ㉖ 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2.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3.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㉗ 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2.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3.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부 칙

이 세칙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